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6급, 전문위원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6급, 전문위원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

#### 임용분야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부서	직무내용
전문위원	임기제 지방행정 주사	1명	강남구의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조례안, 예산안, 결의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</li><li>○ 자치입법활동,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</li><li>○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질의자료 제공</li><li>○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</li></ul>

○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

※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#### 시험일정(안)

원서접수	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인성검사	2차 면접시험	면접합격자발표	임용예정일
'26.4.27.(월) ~ 4.29.(수)	'26.5.6.(수)	'26.5.7.(목) ~ 5.8.(금)	'26.5.12.(화)	'26.5.13.(수)	'26.5.22.(금)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,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## 2. 관련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예규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## 3. 응시 자격 요건

###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인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□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※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1.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☞ 관련분야 : 의회·법제, 지방행정, 지방자치 분야

☞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등에서 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등 관련 입법 조사지원,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

우대요건	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)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
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※ 직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(면접)예정일 기준으로 함

※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,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 
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으로 보완 가능하며, 이때 검증을 위해  
'폐업사실확인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' 중 1종과 '소득금액증명서'를 추가로  
제출하여야 함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### □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(09:00 ~ 18:00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### □ 보수 및 수당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 
등급 **하한액 책정을 원칙**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 
고려하여 협의 결정함.

○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(천원)	하한액(천원)
일반임기제(6급 상당)	86,606	57,708

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 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방법

### 1차 서류전형 (자격요건, 경력사항 등 심사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5조제4항)

### 인성검사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방 법 :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를 이용한 온라인 검사  
※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임

### 2차 면접전형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
- 방 법 :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- 평정항목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44조)

가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나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
다.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라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마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
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### ○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,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합격자 개별통보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

## 6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### □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4.27.(월) ~ 4.29.(수)18:00까지 / (3일간)
  -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(3층)/강남구 대치동
  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☞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 연락 바람
    - 접수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  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※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 불가/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.(우편접수시 사전에 연락바람)

- ▷ 주소 : 우)062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4, 3층 의회사무국 의정팀(강남구의회, 대치동)
- ▷ 우편접수자는 휴대폰 SMS로 접수현황을 통보할 예정이며, 응시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(☎02-3423-8103)
- ▷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(현금×)

### □ 제출서류

#### 가. 공통사항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  - 응시원서 1부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(3×4cm) 1매 이메일 제출(docbee@gangnam.go.kr)
    - 응시수수료 : 강남구 수입증지 7,000원
- ※ 강남구청 민원여권과(본관 1층)에서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 인증기 날인

○ 이력서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

※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,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○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
○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1부

○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응시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고,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(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. 다만,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)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c.or.kr> 발급) 반드시 첨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
-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

## 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

○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사본, 상훈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에 대한 사전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동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사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0조의3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(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)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(문의전화 : 02-3423-8103)

# 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명	임용예정직위	근무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
강남구의회	전문위원	강남구 의회사무국	임기제지방행정주사

<b>주요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례안, 예산안, 결의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</li> <li>- 자치입법활동, 행정사무감사·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</li> <li>-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질의자료 제공</li> <li>-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필요역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과 예·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능력</li> <li>-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판능력을 통한 견제능력</li> <li>- 행정사무감사 보좌능력 및 의사진행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필요지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의회와 의사진행,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지식</li> <li>- 강남구 조직과 기구 등 위원회 소관 조례안 처리를 위한 관련법령 및 규정관련 지식</li> <li>- 예·결산안 분석 및 검토를 위한 지식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응시자격 요건</b>	<p>※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☞ 관련분야 : 의회·법제, 지방행정, 지방자치 분야</p> <p>☞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등에서 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등 관련 입법 조사·지원, 의원보좌 등 근무 경력</p>	
	우대요건	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